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7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2020. 6. 11.(목) 14:00~20:15

2. 장 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3. 출석인원: 별지 기재와 같음

4. 내 용: 별지 기재와 같음

의 장 \_\_\_\_\_

간 사 \_\_\_\_\_



---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7차 회의 회의록

---

2020. 6. 11.

운영지원단

---

## I. 개요

- 일시: 2020. 6. 11.(목) 14:00~20:15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김순석, 김진석, 박균성, 오승이, 윤준, 이미경, 이찬희, 최한돈(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이창열(간사), 고원혁, 서현웅(이상 서기)
- 배석자
  - 견종철(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김정숙(사법정책 분과위원회), 김정환(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서경환(법관인사 분과위원회)
  - 최수환, 홍동기(이상 운영지원단장), 박노수, 안희길, 김도현, 유제민, 배진호, 강정현, 공건개(이상 운영지원단원)

## II. 의사개요

### 1. 대법원장(의장) 인사말씀 및 배석자 소개

- 의장, 각 배석자를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오늘 회의는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이미경 위원께서 제안하신 성평등·성폭력 예방 정책 관련 논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순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보통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진행 시 외부 위원들께서 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장기근무 제도 연구 경과보고’는 외부위원들께도 알려드리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분과위원회에서도 외부 위원 이석을 요청하지 않았음



- 마지막으로 회의자료 외부 공개와 관련하여 어떻게 공개할 자료를 선정할지,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지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2. 2021년 대법원 예산안 변경 내역 보고

-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 회의 이후 변경된 예산안 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함

## 3. 2021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안)(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 건종철 재정·시설 분과위원, 2021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안)을 보고함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 질문,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및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찬희 위원
    - 자료집 9쪽에 서울법원 제2청사 매입 예산이 18억 원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인지?
    - 또한 서울법원 제2청사가 건축되는 위치가 어디인지?
  - 기획조정실장
    -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매년 투입되는 예산만큼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올해는 18억 원이 설계비로 책정되어 있어 그만큼 재산이 늘어난다는 의미임. 서울법원 제2청사 증축 총액은 1,000억 원이 넘고 현재 KDI에서 적정성 검토 중임
    - 서울법원 제2청사 부지는 현재 회생법원과 후생관 건물 사이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음. 여러 안이 있지만 각자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공모를 해야 정확한 위치·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음
  - 의장
    - 현재 서울법원 종합청사의 축구장, 후생관의 처리 방안에 따라 서울법원 제2청사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4. 판사실 및 과사무실 배치기준 등 검토(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 가. 기초발제

###### ■ 견종철 재정·시설 분과위원 기초발제

- 판사실 및 과사무실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① 판사실, 부속실, 재판연구원실 및 과사무실 배치기준의 적정성, ② 판사실 면적기준 및 과사무실 내 서고 면적기준의 적정성, ③ 복사·물품실의 별도 설치 여부를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 나. 토론

######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시설담당관의 답변이 있었음

###### ○ 윤준 위원

- 자료집 상 업무공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논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사무실 배치기준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 ○ 시설담당관

- 용역기관에서 외부 사례 및 현장조사, 법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안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해서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친 상황이고,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면 그에 따라 용역기관이 도면이 포함된 「법원청사설계지침서」 개정작업을 하게 될 예정임. 따라서 용역 기간은 한 달 정도 남아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자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함

######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있었음

###### ○ 윤준 위원

- 법원행정처에서 설계지침을 작성하고 입찰 업체에서는 그에 따라 설계를 하다 보니 전국 대부분의 법원 청사가 지역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적인 건축물이 되는 것 같음
- 건축설계사무소는 설계지침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각 건축사무소의 창의성이 반영되지 못한千篇일률적인 설계도가 나오게 되고, 그런 설계도에 따라 법원이 만들어지는 방식의 업무 처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과연 바람직한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음

- 분과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효율만 중시하기보다는 법원 청사 신축 시마다 자유로운 설계 가능성을 열어두어 창의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음

○ 기획조정실장

- 설계지침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오픈된 상태임
- 기존에는 설계 공모 시 법원이 관여를 할 수 있었으나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는 설계도면 선택 과정에 법원 내부 관계자가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법원 구성원이 사용하게 될 청사 설계를 법원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정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 청사 신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현실적인 필요성을 감안하여 설계지침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해주셨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의견 및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외국의 경우 각자의 개성을 살려 특색 있는 법원이 지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모두가 네모 모양의 사무동, 민원동, 법정동으로 지어져 있고, 입구, 동선, 주차장 위치 등도 예외 없이 비슷해 사진만 보면 어느 법원인지 알 수가 없음. 이런 방식의 청사 신축이 비록 효율성은 있겠지만, 지방 고유의 특성이 법원 청사에 반영되어야 법원의 자부심도 생기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움
- 지금 서울법원 제2종합청사, 대구법원청사 설계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부분에서 벗어난 설계가 가능한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는데, 방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벽에 부딪혔음
- 혹시 법원청사설계지침의 내용을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특징 있는 청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 설계지침에는 청사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징적인 모양의 청



사로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음. 다만 한정된 예산 하에서 최대의 공간 확보를 하려다 보니 비슷하게 설계가 되는 것 같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설계 과정에 법원 관계자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이 제일 맹점인 것 같음. 결국 법원 입장에서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기준 마련을 위해 설계지침을 작성한 것 같음
- 비용 최소화, 공간 확보, 동선 분리 등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의 청사를 보면 법원 구성원들의 동선은 짧게 구성된 반면 민원인들은 조금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게 법원이 추구하는 이상에 걸맞은 청사의 모습인지 아쉬운 부분이 있음
- 판사실의 1인1실 배치 원칙, 재판연구원실의 판사실 인접 배치, 판사실 면적의 탄력적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음. 판사실의 면적 부분에서도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2026년부터 10년 이상 법조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될 예정인 점, 궁극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도 대등한 판사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전과 같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를 구분하여 대우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 지금의 기준은 7~8년 이후 신축될 법원에 적용될 예정인데, 이미 그 때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되는 시점이므로 언급한 것처럼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를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판사실의 면적을 달리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경력대등재판부도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별 없이 경력이 비슷한 판사로 구성되는 재판부이므로 판사실의 크기는 모두 같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또한 고등부장판사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부장판사실’이라는 명칭도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단독판사 등이 혼재되어 혼동을 줄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 발제자의 답변에 대한 의장의 의견이 있었음

- 의장



- 분과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를 구분하고, 부장판사실에 합의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면적을 더 넓게 설정한 것인지?
- 또한 청사 사정에 따라 부장판사실이 단독판사실 또는 배석판사실로 바뀌는 경우가 많을 텐데, 판사실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음. 그렇다면 고법판사, 지법부장, 단독판사, 배석판사 각각 별도로 지침을 정하는 것인지?

○ 발제자

-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를 구별하고, 부장판사실에는 합의를 위한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음
- 분과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고등법원의 경우에 부장판사와의 구별이 없는 것을 전제로 모든 판사실의 면적을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장판사, 단독판사, 배석판사로 나뉘어 있고 경력대등부도 존재해서 문제가 있었고, 결국 오늘 발제한 내용대로 면적을 나누긴 했으나 변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었음
- 관련하여 전속부속실이 아닌 통합부속실을 설치하는 방안이 많은 지지를 얻은 것은 건축 전문가인 분과위원회 위원께서 통합부속실을 설치하는 형태가 공간 재배치에 훨씬 용이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다른 위원들이 영향을 받은 점도 있음

○ 의장

- 다른 의견이 있겠으나 모든 판사실 면적을 동일하게 하고 통합부속실처럼 몇 개의 재판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합의실을 만드는 방향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는 함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본인이 현재 고등법원에서 법원장 출신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에 속해 있는데, 본인의 판사실이 일반적인 고등부장의 판사실보다 훨씬 작음. 이는 예전에 고등부장 1인과 배석판사 2인이 사용하던 공간을 3인이 함께 나누어 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음
- 판사실에 특별히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합의 역시 현재의 공간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부장판사실의 면적을 크게 하거나 별도의 합의실을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뒤에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들이 법관으로 임용되면 배석판사라 하더라도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법관의 판사실 면적은 동일하게 설정해야 할 것 같음
- 또한 윤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를 위해서는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보이므로 별도의 합의실을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음. 본인의 경우 작년에 판사실의 소파를 치우고 6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하니 충분히 합의가 가능했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 및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

- 자료집을 살펴보면 부장판사실과 배석판사실 면적에 차이를 두는 것은 배석판사실의 면적을 조금 더 줄이겠다는 취지임. 고등법원이나 대등합의재판부의 경우 판사실의 면적을 모두 40㎡로 한 데 비해 지방법원 배석판사실만 30㎡로 배정했는데, 이는 배석판사의 판사실 면적을 조금 줄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한 것 같음
- 하지만 김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법원 합의부라 할지라도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지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실의 면적은 모두 같게 하는 것이 맞고, 합의 역시 굳이 부장판사실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또한 추후 공간 재배치의 용이성을 고려한다면, 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전제 하에 모든 판사실의 면적을 40㎡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기획조정실장

- 최한돈 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법원 판사실의 면적을 4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그 면적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장판사실의 면적은 40㎡로 맞추고 배석판사실은 2명이 쓰는 공간을 쪼개다 보니 30㎡로 설정하게 된 것 같음. 만약 지방법원의 판사실을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면 33.3㎡ 정도가 된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 및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종전처럼 판사실에 부속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공간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예전처럼 외부로부터 판사에게 전화가 오는 일도 거의 없고, 기록 전자화를 통해 기록을 운반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속실 직원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부속실 면적 때문에 판사실이 좁아지고 부속실의 채광 등 다른 여건 역시 악화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임. 부속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법관들의 처우 개선 또는 판사실 공간 확보에 쓰는 것이 적절하고, 만약 부속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더라도 통합부속실을 반드시 같은 층에 두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함

○ 김진석 위원

- 현재 현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긴 힘들으나, 부속실 직원이 속기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부속실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함

○ 윤준 위원

- 속기직으로 들어온 직원은 사실 속기업무를 하고 싶어 하고, 부속실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 예상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 하는 분들도 많음
- 속기직은 전문적으로 속기 업무만 하도록 하고, 부속실 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부속실은 같은 층에도 둘 필요 없이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 것임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 오승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자료집 25쪽 ‘여성법관 증가에 따른 사생활 보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 발제자

- 같은 공간에 여성법관과 남성법관이 함께 있으면 아무래도 동성이 있는 경우보다 사생활 침해가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음



○ 오승이 위원

- 동성이 있을 때에 비해 이성이 있는 경우 긴장감이 있기는 하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함. 하지만 사생활 침해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보임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 및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사생활 보호는 여성법관은 물론 남성법관에게도 같이 적용되어야 함. 향후 여성법관이 많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사생활보호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 보이므로, 적절한 공간 배치 등 다른 논거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전자소송 확대로 인해 서고 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 비록 오늘 논의는 판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추후 법정, 증인지원실 등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배치 방안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림

○ 발제자

-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김순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독립된 공간을 부여하는 것은 생활방식, 사고 등에도 많은 차이를 유발함. 재판관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 제공의 의미를 넘어 여러 면에서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이 많은 것 같음
- 재판관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독립된 주체인 법관이 판결하길 원하고, 사법개혁의 방향도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책에 상관없이 법관의 공간은 모두 같게 분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경력이 오래된 법관을 예우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하겠지만, 사용 공간은 이제 평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최근 대형 로펌의 경우 대표변호사 또는 파트너변호사와의 구별을 떠나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대표변호사실과 소속변호사실의 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가 많음
- 부속실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긴 하나 윤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당사자 또는 대리인, 변호인의 전화가 많이 오지도 않고, 필요한 경우 핸드폰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부속실의 취지에 맞게 면적을 넓게 하고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 이에 대한 발제자 및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박균성 위원

- 자료집 38쪽 도면에 중회의실이 그려져 있는데, 법원에서 회의가 어떻게 열리는지는 모르지만 소회의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 검토하셨는지? 또한 복사실은 회의실도 겸한다고 하는데 면적이 조금 작은 것 같음

○ 발제자

- 서고가 실제로는 직원들의 회의실 또는 복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서고 면적을 줄이게 되면 직원의 회의실 또는 복지 공간이 줄어들게 되나, 서고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서고 면적은 줄이되 별도의 회의실 또는 복지공간을 확보하자는 논의는 있었음. 하지만 말씀하신 회의실의 활용 방안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지는 않았음

○ 의장

- 도면은 예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김진석 위원

- 판사실과 과사무실을 같은 층에 배치할 경우 판사실의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설문조사 상의 의견은 경청할 만함. 업무처리의 신속성·편리성 측면에서 판사실과 과사무실을 같은 층에 배치하는 안에 찬성하기는 하나, 판사실의 보안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의장

- 판사실과 과사무실 사이에 구획을 하고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 결정사항

▣ 신축 법원청사의 판사실 배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지침을 정함이 바람직함



- 판사실은 '1인 1실'로 배치하고, 부속실은 채광을 고려한 통합부속실 형태로 함
- 재판연구원실은 판사실과 인접하여 배치하되, 2~3인이 공동사용 하는 것으로 하고, 면적기준을 지침서에 규정함
- 과사무실은 판사실과 같은 층 또는 인접 층에 배치함
- 판사실의 면적은 모두 동일하게 하되, 그 면적은 범위를 정하여 지침서에 규정함
- 과사무실 내 서고는 사무실 면적의 20~50%로 축소함
- 복사·물품실은 층별로 설치하여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함

## 5.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을 위한 예규 검토(소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 가. 기초발제

#### ■ 김정숙 사법정책 분과위원장 기초발제

-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화 대법원규칙 개정 시 ① (가칭)수어통역에 관한 예규 제정 또는 현행 통번역 예규 개정 여부, ②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국고부담 제공 여부를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 나. 토론

####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에 대한 예규를 별도로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의 통번역 예규를 개정할 것인지 여부, 소송관계인이 아닌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제공 여부에 대해 의견주시기 바람. 분과위원회는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인 것 같음

####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자료집 42쪽에 예규를 제정할 경우 수어통역을 더 소홀히 취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 발제자



-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기재한 것임. 사실 분과위원회에서도 이를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제정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한 것 같음
- ▣ 의장, 예규 제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물은바, 참석한 위원 전원이 예규 제정안에 찬성하였음
-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문제는 자문회의에서 부여한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지 않아도 관계가 없고 연구·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음
  -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문제는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일선 법원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음
-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
    - 분과위원회 임기가 올 10월에 종료되고, 다음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언제 또 논의가 진행될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여 수어통역에 전반에 관한 논의를 완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 예규 조문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내고자 함. 종전의 통번역 예규는 외국인 피고인을 상정하여 단순히 절차적인 내용 규정을 목적으로 함에 비해, 이번 예규는 장애인의 사법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예규안 제1조는 그 취지가 후단에 규정되어 있고 통역인의 선정 및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전단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바꾸면 어떨까 싶음. 따라서 제1조를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소송 등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의 절차, 방법, 수어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의 지정, 기타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꾸는 게 좋겠음
    - 제2조는 적용범위인데, 제1항은 방청인을 제외하면 소송관계인이 주를 이루는 반면 제2항은 소송절차 외까지 수어통역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율범위에 차이가 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됨. 따라서 제2항을 제1항으로 하



고, 제2항을 ‘이 예규는 소송당사자·증인·감정인 등 전항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 및 관계인 또는 방청인에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을 때 적용한다’로 규정하여 절차상 이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제3조에 따르면 방청인은 7일 전까지 수어통역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반대해석을 하면 방청인이 아닌 소송당사자 등은 기간 제한 없이, 심지어는 변론기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여 해석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방청인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 등도 최소한 수어통역 준비에 필요한 기간 전까지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 경우 방청인 또는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차이를 둘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방청인의 경우 7일 전까지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방청인의 수어통역 신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방청인에 한해 신청기한을 특별히 제한할 것이 아니라 ‘방청인의 경우는 공판 등 절차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기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 법원은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도로 규정하여 방청인의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단서로 두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함. 또한 신청기한은 소송당사자, 방청인 관계 없이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동 조항 후문에 ‘위 기일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가 지칭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는 빼고 ‘기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음
- 다음으로 제6조 결격사유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함. 분과위원회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면서 다른 자격 관련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는 법 개정이 다수 이루어졌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원의 통번역은 재판을 받는 사람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자격증 취득 결격사유와는 같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함. 따라서 외관상 통번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신뢰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람은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런 취지에서 제1호에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을 결격자로 규정했으면 좋겠음
- 마지막으로 제16조의 경우 제1항 제1조가 ‘피신문자가 법정에서 있는 때에는’이라고 규정하여 형사절차 혹은 신문과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음. 수어통역에 대한 이의는 신문절차 이외에도 일반변론이나 의견진술, 재판 선고 절차에서도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16조 제1항 제1호의 ‘피신문자’를 ‘피통역자’로, ‘신문과 수어통역’의 ‘신문’은 ‘신문, 변론, 기타 진술’로 고치는 것이 어떨까 싶음

○ 발제자

- 분과위원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종 예규안을 마련할 때 검토하고 반영할만한 의견인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발언, 최한돈 위원의 의견,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이 있었음

○ 의장

- 보통 절차규정에서 3일로 많이 함에 비해 수어통역 신청을 7일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수어통역인을 구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인지?

○ 최한돈 위원

- 방청인의 수어통역 신청 남용 방지를 위해 이해관계 있는 방청인 등으로 제한을 가하는 경우 개념이 애매모호해짐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경우 미리 7일 전에 신청을 하도록 절차적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보임

○ 의장

- 수어통역인을 구하는 것이 일반통역인을 구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리라 생각함

○ 기획조정실장

- 지방의 경우 특히 구하기가 어려움

○ 의장

- 최한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조를 수정하면 신청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일선 법원 수어통역 신청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청각장애인인 방청인이 특정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되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청을 위해 수어통역을 신청하는 경우 여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남용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서로 구별을 할 필요



가 있음. 따라서 소송관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방청인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1항은 현행대로 하고, 2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청인에게 수어통역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두며, 3항에서 신청기한 등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이에 대한 박균성 위원 및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의장

- 박균성 위원께서는 재판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청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자는 것이고, 최한돈 위원께서는 원칙적으로 방청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원칙과 단서의 관계가 됨

○ 박균성 위원

- 소극적으로 규정하느냐 적극적으로 규정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음

○ 최한돈 위원

- 장애인인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제공 문제는 사실 공개재판 원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아무 할 일 없는 사람이 법정에서 방청할 일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법정에서 방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이 사람들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장애인의 법정방청권은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임
- 또한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을 원칙으로 규정해야만 재판부에서도 큰 고민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어통역 신청을 허가해서 진행할 것임. 원칙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허가가 되지 않아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릴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수어통역인과 외국어 통번역인은 모두 일종의 전문가인데, 이들에 대한 수당 자체가 조금 부족한 실정이므로 모두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또한 예규안 1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형사 절차에서만 이의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예규안 제14조 제1항이 형사절차, 제2항이 다른 절차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제2항은 ‘다른 모든 소송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송과 심리절차가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제2항을 ‘다른 소송 및 심리절차’라고 규정하여 비송 등 다른 절차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신청서도 민사, 형사, 비송, 신청을 포괄할 수 있는 통일된 양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 및 질문,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청인의 수어통역 신청권은 반드시 명시됐으면 좋겠음
  - 최한돈 위원께서 3일 전 신청을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 실무적으로 수어통역을 준비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 의장
  - 적절한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 및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음
- 이미경 위원
  - 자료집 48쪽 각주에 수어통역 자막 동시제공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막까지 제공하는 경우 비용상 문제가 있는지? 본인이 속한 단체에서는 행사가 있는 경우 꼭 시각장애인만이 아니라, 약시 등 보고 듣는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자막통역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의장
  - 음성인식을 통해 바로 자막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는 자막을 제공하기 위해 속기사를 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자막을 제공하기에는 인적·물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음
- 이미경 위원
  - 본인이 여러 행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잘 보이고 잘 들리는 사람 위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점임. 이번 논의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정책심의관의 답변, 최한돈, 윤준 위원  
의 의견이 있었음

○ 의장

- 최한돈 위원께서는 피성년후견인 등을 결격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분과위원회에서는 피후견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자고 논의된 것으로 보임

○ 사법정책심의관

-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요한 부분에만 독자적 법률행위능력을 제한해야지 일률적으로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따라 현재 많은 법률이 개정되고 있는 추세임
-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통번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격사유로 두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그에 맞게 예규를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음
- 신청기간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분과위원회에서 7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전국의 수어통역인 수급 현황을 고려한 것임. 현재 수어통역인 명부에 120여명이 등재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1~2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음.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신청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 신청서가 접수되는 시간, 수어통역인에게 연락을 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장애인사법지원 소위원회에서는 7일로 규정했는데, 광주지방법원 내규가 3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한돈 위원

- 성년후견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만약 피성년후견인이 통역이나 번역을 하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그 통번역에 신뢰를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마당에는 결격사유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윤준 위원

-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심신상의 장애로 수어통역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성년후견제의 취지에 반해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임
- 파산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사업 등을 하다보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고 제도적으로도 파산선고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는데 예전처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마치 범죄인처럼 취급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제2호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최한돈 위원

-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는 삭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격사유로 두어야 하지 않나 싶음. 결격사유로 두면 처음부터 심사를 통해 걸러지기 때문에 선정 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오승이 위원

- 제정안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것처럼 피성년후견 등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 의장

- 현재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이견이 있는 결격사유 부분을 제외한 제1조, 제2조에 대해서는 최한돈 위원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 (모든 위원 동의함)

-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제공을 원칙으로 할지, 아니면 예외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제공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원



칙적으로 제공하고 예외적인 경우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결격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된 예규를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고, 이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그에 맞춰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사법정책심의관 및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의장

- 윤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처럼 제한을 완화하자는 이론이 있는지?

○ 사법정책심의관

- 아직까지 논의는 있지만 입법화된 것을 찾아보지는 못했음
- 성년후견제의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법무사법 등에서 이전에 당연 결격이었던 부분을 개정했는데, 이는 피후견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 점을 감안하여 분과위원회에서도 피성년후견인 등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김진석 위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 해지 등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윤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산선고 여부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만하다고 생각함

○ 의장

- 현재 공무원 결격사유에 파산선고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파산선고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음
- 피후견 관련해서는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은 공무원 결격사유인 반면 특정후견은 결격사유가 아님

■ 다음과 같은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이 있었음



-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재정법상 국고 부담이 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기재 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지금까지는 소송관계인에 대해서만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방청인에 대해서도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 국고 부담액을 추산한 후 기재부와 추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사법지원실에 추가 국가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취하도록 하겠음

#### 다. 결정사항

-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을 위한 대법원규칙이 개정될 경우,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후속조치를 취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예규 제정 시, 소송관계인뿐 아니라 방청인에 대하여도 수어통역을 국고 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청인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한 예규 제정안을 토대로 자구와 체계 등을 정비하는 후속 검토를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함

### 6. 법원사무관 승진제도 개선 방안(소관: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 가. 기초발제

- 김정환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간사 기초발제
  - ① 시험승진제도 폐지시기, ② 특별승진제도의 세부절차를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사무관 승진시험은 2025년 폐지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의견 있으신지? 2025년 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후 제도개선을 추진하면 되는지?



- (각 위원 모두 동의함)
- 그 다음 남은 문제는 근무평정제도를 실질화하는 방안인데, 이 부분은 분과위원회 논의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논의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TF를 구성할까 함. 또한 TF를 구성하는 김에 승진시험 폐지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특별승진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 승진시험 폐지 이후 심사승진제도만 운영할지 아니면 특별승진제도를 병행할 것인지도 포함시켜 연구·검토를 요청하고자 함
- TF의 가장 큰 과제는 실질적인 평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평정자도 중요하지만 평정을 받는 피평정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인사운영심의관실과 인력운영심의관실 공동 주관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피평정자인 5급 이하 공무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함.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지?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법원행정처 내 TF보다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를 부가하되 법원행정처 유관 실·국, 이해관계 있는 법관, 노동조합 등을 참여시키는 것은 어떠한지?
    -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는 평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하므로 기존의 분과위원회의 시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현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의 외부위원들은 평정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므로 TF보다는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법원구성원 전체에게 조금 더 투명하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함
  - 의장
    -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현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와 중복되어 이미 구성한 기존의 분과위원회 활동이 종료된다는 점이 걸림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시험을 폐지하고 향후 특별승진, 심사승진을 도입하게 되면 업무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업무평가는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요하므로 관련 전문가



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음

- 행정부의 행정 원칙 중 하나가 적극 행정이고 대통령령으로 적극 행정에 관한 규정도 제정되어 있음. 사법행정은 재판지원이 그 목적이므로 행정부의 행정과는 다른 면이 있으나, 오늘날 시대 요구에 맞게 적극성이 평가요소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자료집 114쪽 평가요소 중 적시성을 적극성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음
- 자료집 117쪽에 현장부서와 사법행정부서의 구분이 있는데, 향후 심사승진의 범위가 확대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이유로 오히려 사법행정부서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다음과 같은 김순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지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분과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음. 하지만 기존의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기존의 분과위원회를 폐지하는 부담도 덜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목적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음
- 근무평정 개선은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업무 평가 또는 직위분류까지 해야 하므로 복잡하기까지 한 과제임. 또한 법원 업무는 일반 기업처럼 업무성과를 수량화·객관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성원 간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음
- 우선 수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량화하고, 수량화가 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 의장 및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
  - 실질적 평정제도 마련을 위해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은 김순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의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를 해체하는 부담이 발생하므로 적절치 않은 방안인 것 같고, 정 필요하다면 기존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는 방식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음. 2025년부터 실질적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한 심사승진 및 특별승진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부터 실질적 근무평정 방식을 고민하



고 결론이 나오면 근무평정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승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 발제자

- 상반기 인사평정을 5월경 시작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빨리 준비해서 2021년 상반기 평정부터 적용하면 4년 정도의 실질평정 기간이 생길 것 같음

○ 의장

- 공무원 평정은 1년에 2회, 5월과 11월에 이루어짐

○ 최한돈 위원

- 그렇다면 올해 안에 실질평정 방안이 반영되어야 내년부터 실질평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음

○ 발제자

- 통상 승진심사 시 3년 치 평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된다면 좋긴 하나, 늦어지더라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 평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 의장

- 올해 내 실질평정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5월에는 바뀐 평정방식을 시범적으로라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지금 심사 시 직전 3년 동안의 평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2025년 심사승진 또는 특별승진제도를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

○ 최한돈 위원

- 올해 안에 실질적 근무평정방식에 대한 모델을 확정해야 한다면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의장께서 말씀하신 TF 방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의장

- TF의 연구과제에 순서가 있음. 시험 폐지 후 승진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후순위가 될 것이지만 실질평정 방안과 특별승진 절차 마련은 올해 내에 어느 정도 설계가 끝나야 함. 또한 각 과제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인원을 달리 구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TF를 구성하는 경우 진행이 빠를 것 같음
-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분과위원회보다 소위원회가 더 커지는 상황이 돼서 우려되는 측면은 있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내년, 내후년의 특별승진은 종전의 평정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할 것은 아니라고 보임.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평정제도 개선안은 향후 10년, 20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촉박하게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겪기보다는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법원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2025년부터 실제로 시행한다는 전제 하에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개선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당장 내년의 특별승진은 계획을 수립하고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절차적인 부분을 다듬을 필요가 있긴 하나, 근무평정 개선안 마련은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음
- 특별승진의 세부적 절차 마련과 근무평정 개선에 대한 검토를 단기간 내 동시에 TF에서 진행하기는 힘들 것 같음. 일단 내년부터 시행해야 할 특별승진의 세부적 절차 마련에 대한 검토를 우선 진행하되 근무평정 개선안 검토는 다른 절차를 밟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근무평정 개선 방안은 신중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윤준, 김진석 두 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함.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 근무평정에 바탕을 둔 심사승진 방식을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너무 조급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됨. 적어도 실질평정에 따른 자료가 3~4년 정도가 쌓일 필요가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승진시험 폐지 이후의 제도설계는 급한 과제가 아니므로 이는 제외하고, 평정제도 개선 및 특별승진 절차 마련을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되, 분과위원회 구성원에 피평정자인 5급 이하 법원공무원을 추가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음. 괜찮으신지?
- (각 위원 모두 동의함)
- 그렇다면 법원공무원 평정 실질화 방안과 과도기적으로 실시될 특별승진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9월 자문회의에서 경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음

#### 다. 결정사항

- ▣ 사무관 승진시험은 2024년까지만 실시하고, 2025년부터는 사무관 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함
- ▣ 사무관승진제도 개선을 위하여, ‘평정 실질화 방안’과 ‘과도기적으로 실시될 특별 승진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안건을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에 추가 회부하고, 2020. 9.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그 논의 경과를 보고하도록 함
- ▣ 위 추가 회부 안건의 원활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위하여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평정대상자 등을 추가하기로 함

### 7.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소관: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 가. 기초발제

- ▣ 김정환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간사 기초발제
  - ① 법원공무원 보직기간 장기화, ② 전문직위 도입을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 나. 토론

-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크게 보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장기화 하는 방안, 전문직위 제도를 4개 분야에 도입한다는 내용임.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람
-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 및 질문, 이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음
  - 이찬희 위원
    - 본 검토를 진행함에 있어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법원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지?
    -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법원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음



○ 발제자

- 현재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느 정도 대표성을 지니고 있음. 노동조합에서 2인을 추천하였고, 직급별로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위원이 구성되어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여의치 않은 측면이 있었음
- 오늘 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을 인사부서의 입장에서 다시 재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직위 지정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소속 법원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나, 보직기간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괜찮다고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 윤준 위원 및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

- 전문직위를 업무위험도 상존분야인 소송수행전담, 가족관계등록,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일응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집행 역시 업무위험이 있고 전문성도 필요해 보여 이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음
-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사실 선호 업무로 보이는데, 가점까지 부여되면 구성원들이 어찌 반응할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가점은 기피업무에 한정해서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기피업무에 한정하여 가점을 부여하되, 업무수행기간이 종료된 이후 그 결과를 평정하여 사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은 어떠한지 여쭙고 싶음

○ 윤준 위원

- 가족관계등록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사무관이 된 이후에는 부담스러워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음

○ 발제자

- 집행 분야에는 사법보좌관이라는 전문가가 있어 굳이 검토하지 않았음
- 가족관계등록업무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처리 업무와 가족관계등록 감독업무로 나눌 수 있는데, 비송 업무에 대한 선호는 나름 있는 편이지만 일선 읍·면·동 관서공무원을 상대로 업무감독 및 질의회신을 담당하는 업무는 기피하기 때



문에 선호도에 큰 차이가 있고, 이번에 전문직위 분야 지정 검토를 한 것은 감독 업무임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질문 및 의견, 이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전문직위를 부여하는 대상 직급은 어떻게 상정하고 계신지?

○ 발제자

- 사실상 사무관이 될 가능성이 큼

○ 윤준 위원

- 부서의 업무 성격에 따라 전문직위 부여 대상 직급을 내리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음. 일선 법원에서 업무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회생, 파산, 채권집행 등에 초임 실무관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문직위를 부여하여 4년 이상 근무하게 하면 동기부여가 될 것이므로 굳이 사무관 이상에게만 전문직위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전문직위를 부여받은 전문관의 전보인사에 대한 제도설계는 되어 있는지? 한 법원에서 4년을 근무하는 것인지, 아니면 1군 법원에서 2년을 근무한 후 2군 법원에서 2년을 근무할 수 있는 것인지?

○ 발제자

-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사법행정 담당 기관, 항소법원, 전문법원들이 1군 법원에 속하고, 규모가 큰 지방법원이 2군 법원에 속하게 되는데, 평정 등 여러 이유로 1군 법원 근무를 선호하지 않다보니 1군 법원에 강제전보를 시키게 됨. 1군 법원에서 2년을 근무하면 2군 법원에서 4~5년을 근무하게 되는데 2군 법원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 업무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음

○ 윤준 위원

- 그렇다면 1군 법원의 경우 전문관이 4년을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인지?

○ 발제자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 전문분야 정도만 4년을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임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현실적으로 선호부서, 비선호부서, 기피부서를 나누긴 하나 원론적으로 보직을



선호와 비선호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임. 적절한 명칭이 떠오르지는 않으나 업무난이도가 높은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로 나누고, 난이도가 높은 부서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이 있었음

- 행정부의 경우 국가기능 중 개별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상세히 분류한 다음에 구체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한 업무, 매우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필요한 업무 등 객관적으로 전문직위에 해당할 만한 업무인지를 평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우리가 전문직위로 지정하는 업무 분야에 대해 기재부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전문직위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가족관계등록업무의 경우 선호되는 업무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는데 이 경우 업무를 상세하게 분류하여 전문직위를 부여해야지, 가족관계등록 업무 전체를 전문직위로 하는 경우에는 기재부가 수당 등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주지 않을 것임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선호, 비선호에 따라 나누기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전문직위 지정 분야를 정하는 것이 내부는 물론 외부 설득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행정부의 경우 전문직위를 지정할 전문분야를 어떻게 정하는지?
- 기획조정실장
  - 행정부의 경우 각 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통해 전문직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음. 인사혁신처에서 행정 각부가 신청한 특정 분야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 이후 각 부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게 됨
  - 사법부는 행정부와 달라서 바로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정 업무 분야에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필요할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전문직위 논의는 선호, 비선호 보직을 감안하여 출발하긴 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해당 업무가 전문직위를 부여할 만한 업무인지 여부인 것 같음
-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등을 통해 해당 업무 분야에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한지 확인 후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음. 소송수행, 공탁,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전문직위 지정 검토를 함에 있어 그런 조사를 수행하였는지?

○ 발제자

-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전문직위 부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전문직위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법원공무원의 실력도 향상시키고 긍지도 세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 역시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재부를 설득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음. 향후 범위를 넓히거나 대체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일단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 및 의장의 질문, 이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음

○ 김진석 위원

- 보직기간 장기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됨. 하지만 과거 한 번 시행했으나 불만이 커 폐지된 전례가 있는데, 불만을 야기한 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또는 보완조치가 마련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상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만 강조한 것인지 의문임

○ 의장

- 2007년 시행했다가 다시 돌아간 이유가 당시 비선호 보직에서의 장기근무에 대한 불만, 선호보직으로의 전보 기회 제한 등 때문이었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할 방법은 있는 것인지?

○ 발제자



- 선호 보직에서 근무하다가 비선호 보직으로 전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으나, 비선호 보직에서 비선호 보직으로 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이 있을 수 있음
- 1군 법원은 2군 법원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1군 법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평정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음. 이 때문에 1군 법원으로의 전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결국 1군 법원은 서열이 낮은 직원이 많이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한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을 4년으로 하되, 비선호 보직에서 2년을 근무하는 경우 선호 보직에서 2년을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실질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큰 불만 없이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공탁, 소송수행전담, 가족관계등록사무, 사법행정전문분야 등이 전문분야로 인정받을 만한지?

○ 기획조정실장

- 기재부와의 협의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운을 띄우고는 있음
- 모든 행정부에 소송수행전담자가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전담을 전문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되긴 하나, 어쨌든 시도는 해 봐야 할 것 같음.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기획조정실에서 전문직위 도입과 관련하여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또한 업무위험도라는 표현 보다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이 기재부와 협의하는데 유리할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전문직위를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라고 표현하면 전문성은 물론 업무난이도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음. 향후 어떤 직위를 전문직위로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듯함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보직기간 장기화 관련, 4년 동안 힘든 일만 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사항에 전보와 사무분담 시 업무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다. 결정사항

- ▣ 보직기간 장기화와 관련하여, 필수보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보와 사무분담에 있어서 형평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난이도 높은 업무영역에 대하여 전문직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공탁, 소송수행전담, 가족관계등록 사무, 법원행정처 사법행정 관련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함이 바람직함. 전문직위의 필수보직기간은 4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8. 사법행정자문회의 신규 안건 제안: 성평등 정책 및 성폭력 예방 정책 논의

#### 가. 제안 설명

- ▣ 이미경 위원(대표제안 위원) 제안 설명

#### 나. 토론

-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개인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관 최고책임자의 강력한 인식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인사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임. 법관인사는 2월에, 법원공무원 인사는 1월, 7월에 이루어지는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 자료 1쪽을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간 여성법관의 비율이 29.83%에서 31.39%로 변화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비율로는 비록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이지만 여성 지법부장이 2018년 140명에서 2020년 220명이 돼서 80명이 증가하였고, 고법판사는 28명에서 51명이 돼서 거의 2배가 되었음
  - 2017년까지만 고법부장 승진인사가 있었는데, 2020년의 여성 고법부장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5명 그대로임. 2018년 여성 고법부장 7명이 2019년 왜 5명이 되



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것은 2분이 대법관이 되었기 때문임

- 위와 같은 점을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현재로는 풀이 적어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고등부장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고등부장관사 직무대리 발령을 내는데, 자료에는 없지만 25기 17명 중 남성 12명, 여성 5명이, 26기 8명 중 남성 6명, 여성 2명이 고등부장 직무대리로 발령되었음. 또한 자료 2쪽을 보시면 각 기수별 남녀 법관 비율이 나와 있는데, 35기부터 여성 법관의 비율이 40%에 육박하기 시작하고, 38기는 약 46%, 변시 1회의 경우에는 50%, 변시 3회는 57%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해가 갈수록 여성 법관의 풀이 증가한다는 의미임
- 또 다른 예를 들고자 함. 최초 여성 대법관이셨던 김영란 대법관이 2003년도에 고등부장이 되고 1년 만에 대법관이 되셨는데 당시 나이가 47세였고, 김소영 대법관도 2012년 2월에 고등부장이 되고 같은 해 11월 47세 나이로 대법관이 되셨음. 반면 박정화 대법관은 2013년에 고등부장이 되고 2017년 52세의 나이로 대법관이 되셨고, 민유숙 대법관도 2011년 고등부장이 되고 2018년 대법관이 되셨으며, 노정희 대법관 역시 2015년 고등부장이 되고 2018년 대법관이 되셨는데, 그만큼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 매년 법관 사직자의 남녀비율 역시 체크하고 있음. 2018년에는 51:3명, 2019년에는 42:1명, 2020년에는 55:5명이고, 직급별로 살펴보면 판사의 경우 2018년 6:1에서 2020년 8:2인데, 총비율로 따지면 10% 이하, 5~8%의 법관이 사직을 해서 재직 기간은 조만간 수평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자료 4쪽에는 사법연수생 기수별 수료자 남녀 비율이 나타나 있는데, 38기만 하더라도 여성의 비율이 36%임에 비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성 법관 비율은 40%를 상회하고 있음
- 다음으로 법원공무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음. 자료 6쪽을 보면 여성 사무관은 2017년 99명에서 2020년 121명으로 늘었고, 서기관은 34명에서 54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 만큼 여성의 풀이 증가했다는 의미임. 다만 부이사관은 5명에서 4명으로, 이사관은 1명에서 0명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승진 이후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임



- 자료 7쪽에는 2004년 이후 9급 공채로 들어오는 남녀비율이 나타나 있음. 보시면 모두 40%를 상회하고 2020년에는 60%가 넘음. 이를 보면 향후 여성 풀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 5급 공채시험인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는 9급 공채와는 달라서 9쪽에 세부적인 사항을 적시하였는데, 2009년 여성 비율이 50%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통상적인 정도로 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그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음
- 자료 10쪽에는 각종 위원회의 성비가 나타나 있음. 본인은 법 규정을 알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여성 비율을 맞추는데, 법관징계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법원감사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40%를 넘고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55%에 이르는 것은 40%에 가까운 비율의 위원 지명을 본인이 했기 때문임. 반면에 법관인사위원회, 기타 위원회의 경우 외부 추천 위원이 남성으로 추천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 비율이 떨어지고 있음
- 이찬희 위원께서 계시니 말씀드릴. 법관평가제도 TF를 구성하며 법관 4명, 변호사 4명을 추천을 받았는데, 법원은 남성 2명, 여성 2명으로 위원 지명을 한 반면 변호사단체는 4명 모두를 남성으로 추천했음. 또한 법관인사위원회도 외부 위원이 전부 남성으로 추천되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외부위원도 여성으로 추천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음
- 반반이 원칙이긴 하겠지만, 본인은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도 3분의 1 룰을 지키고 있음. 위원회 위원장의 반도 본인은 여성으로 임명하는데,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님, 양형위원장님 모두 여성임
- 본인 역시 챙기고 싶었는데 이미경 위원께서 아주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것 같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그와 같은 점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저절로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법원 역시 노력하도록 하겠음
- 본인이 또 하나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은 여성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 부분임.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근무평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긴 하나, 솔직히 이야기하면 행정부가 사법부보다 빨라서 육아



후직, 경력 산입 등 분야에서 사법부가 행정부를 따라가고 있는 형편임. 예산, 법규 등 여러 문제가 원인이겠지만, 2018년경 육아휴직을 경력에 산입하는 등 사법부도 제도 개선을 많이 했음

- 성폭력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취임 이후 2018년 미투운동이 발생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현재 코트넷 성희롱·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배너 ‘톡톡’이 우리 사법행정자문회의와 같은 열에 있는데, 이는 어느 국가기관보다 이 큰 것임
-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해 신고도 받고, 여러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확보된 편의성만큼 과연 성폭력 등이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항상 우려하고 있음
- 법관은 물론 법원공무원에게 특정 행동이 성희롱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나, 그 교육은 보여주기식 교육이 아닌 실질적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소망임.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젠더법 연구회를 통해 경력법관연수에는 모두 성인지 관련 교육을 추가하고 있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 스스로가 강의하는 코스로 구성하고 있음
- 본인은 실제 성폭력 사건을 다룬 법관이 쓴 책, 젠더법 연구회에서 격년으로 발간하는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이라는 책 등이 굉장히 와 닿고 귀하게 보고 있는데, 성인지감수성을 법정에서 구현하기 위해 향후에도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성인지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람
- 기획조정실장
  - 성인지예산에는 직접적으로 양성평등과 연관된 예산도 있지만 여성의 권리를 높여주거나 지원하는 예산, 예산 투입의 결과가 남녀 대비로 나오는 예산도 포함됨. 법사위 위원들이 국선변호료가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는 점에 대해 지적을 하긴 했지만, 국선변호인 예산도 남성 피고인과 여성 피고인에 대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강학상 의미의 성인지 예산이 맞긴 함



- 예산 편성 체계는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가부에서는 성인지예산을 세부사업 단위로 설정하고 있음. 반면 대법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많지만 대부분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표면적으로는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의장
  - 여성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드는 예산은 성인지예산이 아닌지?
- 기획조정실장
  - 이미경 위원께 보내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양성평등교육, 출산여성 육아용품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업들이 세부사업이 아닌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성인지예산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임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지자체에서는 “○○아가씨” 선발을 위한 예산도 성인지예산으로 낸 적도 있음
  - 기획조정실에서 보내온 자료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성인지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음
  - 출산휴가는 당연히 여성이 사용하겠지만 육아휴직은 남성 역시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육아는 당연히 여성의 일로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법원이 앞장서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함
  -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편견에 의해 피해자에게 왜 그 장소를 갔는지,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 피해자를 비난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판결문을 쓰시는 법관들을 아직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법원 전체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이에 대한 기획조정심의관 및 오승이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본인 역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동감함. 요즘은 남성도 육



아휴직을 많이 쓰는데, 혹시 심의관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분이 계신지?

○ 기획조정심의관

- 본인이 36기인데 동기나 후배 남성 법관은 과거처럼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지는 않고, 다만 급여가 워낙 줄어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경제적 여건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할 뿐임.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남성 법관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임

○ 오승이 위원

- 육아휴직 이야기가 나와 말씀드림. 본인 역시 2009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을 때 보다 동료 남성 법관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접해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음
- 다만 여성법관은 대부분 맞벌이인 반면 남성 법관은 외벌이인 경우가 많은데, 외벌이인 남성 법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가정경제에 심한 타격이 있어 육아휴직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고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위와 같은 점이 본인 역시 굉장히 안타깝고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하게 되는 면이 있음
- 최근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법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급여도 반, 휴가도 반으로 깎임에 비해 단축근무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무분담으로 인해 업무는 줄지 않는 경우가 있고, 특히 배석판사의 경우 재판 운영에 주도권이 없어 단축근무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무분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음. 위 사항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제도개선 법관 토론방에 사무분담 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주십사 글을 올렸음
- 당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축근무를 하는 법관은 법원 입장에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축근무 법관 때문에 다른 법관이 피해를 받는다는 시각이 바뀌지 않고 있고, 재판장들도 사건을 100%가 아닌 75%만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분과위원회에 회부를 하려면 과제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람. 위원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정기적으로 관련 보고를 받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 이에 대한 의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있었음
  - 오승이 위원
    - 성인지예산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인지예산의 실질적인 개념을 연구하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지?
  - 의장
    -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과연 어떻게 도움이 될는지 의문임
  - 기획조정실장
    - 오승이 위원께서 올리신 글을 보았는데 제도 운영 또는 복무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종전과 다른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분과위원회 또는 TF를 구성하고 젠더법 연구회와 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싶음
  - 오승이 위원
    - 분과위원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TF도 괜찮을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2018년 봄 법원행정처에서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음. 당시 현황 조사와 향후 계획을 잡았었기 때문에 당시 예정되어 있던 계획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점 혹은 보완 사항이 있는지 중간점검을 한 후 분과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것은 어떨까 싶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성평등, 성폭력 예방정책 관련, 젠더법 연구회와 협업을 통해 그 동안 사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지 현황 파악 및 점검 진행하도록 하겠음



#### 다. 결정사항

- ▣ 법원행정처가 젠더법연구회와 협력하여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사법부가 해 왔던 노력을 점검하고 그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한 뒤, 지속 논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 배진호 인사심의관, 강정현 인사담당관, 서현웅 사무관(서기)을 제외한 배석자는 퇴장

### 9. 장기근무제도 연구 경과 보고(소관: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 가. 기초발제

- ▣ 서경환 분과위원장 기초발제
  - 현장 배부한 별도 자료에 의하여 장기근무제도에 대한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연구 경과를 보고함
    - ① 장기근무 대상법원에 대한 검토, ② 장기근무 형태에 대한 검토, ③ 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 나. 논의

- ▣ 2021년 정기인사 시 장기근무 제도의 도입 여부와 범위, 제도 운영방식에 관하여 논의함

#### 다. 결정사항

- ▣ 장기근무 제도의 의의에 대한 위원들의 공감감이 있었음
- ▣ 2021년 정기인사 시 장기근무 제도의 도입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추후 확정하되, 2020. 9. 자문회의까지 구체적인 제도 시행방안에 관한 추가 연구를 분과위원회에 회부함

※ 이석했던 배석자 재입장



---

## 10. 사법행정자문회의 회의자료의 외부 공개에 대한 논의

### ■ 결정사항

- 회의자료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를 생성한 법원행정처 담당 실·국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개별 자료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11.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견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7차 회의록 작성 시 ‘판사실 및 과사무실 배치기준 검토’ 논의 중 일부 위원의 발언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의결함

##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

- 일시: 2020. 9. 10.(목) 10:00
- 장소: 대법원

(끝)